

대한상공회의소 발간 “UCP 600 공식 번역 및 해설서”상의 문제점과 그 보완에 관한 연구

이 시 환¹⁾

-
- I. 문제의 제기
 - II. 신용장의 관계당사자와 관련된 용어
 - III. 운송서류와 관련된 용어
 - IV. 보험서류와 관련된 용어
 - V. 표현상의 문제점
 - VI. 결 론
-

I. 문제의 제기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 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이하 “UCP”라 한다)은 신용장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무역의 증진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이 신용장통일 규칙은 1933

* 경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년에 제정된 이래 상관습의 변화를 수용하여 그동안 10여년을 주기로 하여 6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며 현행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6차 개정 규칙(이하 “UCP 600”이라 한다)이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신용장 통일규칙이 개정될 때 마다 이를 한글로 번역하고 해설하는 책자를 발간해 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발간한 UCP 600 해설서에서는 종래와 달리 책자의 명칭을 “UCP 600 공식번역 및 해설서”¹⁾로 하여 “공식”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책자의 서문에서 “특히 향후 신용장 관련 책자 발간 등 신용장 통일규칙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공식 번역서의 용어를 사용하여 규칙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실로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장통일규칙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 더 나아가 무역에 관련된 용어가 지나치게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 책을 저술할 때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책자에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웃 일본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이러한 때에 공식 번역서를 출간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반갑고 또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공식번역서를 언뜻 보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무언가 아쉬운 점이 있다. 공식 번역서가 되기 위해서는 표현이 통일되어야 한다. 또한 용어도 새롭게 만들기 보다는 널리 이용되고 있고 내용상으로도 보편·타당성 있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자에서는 표현이나 사용하는 용어 중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눈에 띈다. 물론 일반 책자의 경우는 약간의 표현상의 문제나 개개의 용어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공식 번역서라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여기서 이 글은 공식번역서상에 있는 용어 및 표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바람직한 공식번역서가 되고, 또한 앞으로 계속 발간하게 될지도 모르는 공식 번역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

1)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전국은행연합회, UCP 600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 2007(이하 “공식번역서”라 한다).

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II. 신용장의 관계당사자와 관련된 용어

1. Issuing Bank

공식 번역서에서는 Issuing Bank를 “개설은행”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
고²⁾, 지난 1993년에 대한상공회의소 ICC 한국국내위원회가 발간한 「제5차
개정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라는 해설서(이하 “제5차 규칙 해설서”
라 한다)에서도 Issuing Bank를 “개설은행”으로 번역하여 해설하고 있다.³⁾

원래 개설은행이라는 번역은 초기의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Opening
Bank”라는 용어를 사용한데서 비롯되었다. 그 후 1974년 제3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부터는 Opening Bank 대신에 Issuing Bank라는 표현만을 사용
해 오고 있으나, Issuing Bank의 우리 말 표현은 통일되지 못하고 개설은행
또는 발행은행으로 번역하여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우선 우리나라 및 일본
에서 발행된 각종 책자에서의 Issuing Bank의 번역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Issuing Bank의 번역어

구 분	개설은행	발행은행
강원진, 신용장론 ⁴⁾		○
강호경·임목삼, 최신무역결제론 ⁵⁾	○	
구종순, 무역실무 ⁶⁾	○	
박대위, 신용장 ⁷⁾	○	
방희석, 무역실무 ⁸⁾	○	

2) 공식번역서, p.17 참조.

3) 대한상공회의소 ICC 한국국내위원회, 제5차 개정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 1993, p.22 등.

4) 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2002, p.60.

구 분	개설은행	발행은행
양영환 · 오원석, 무역상무론 ⁹⁾	○	
이대호, 신용장론 ¹⁰⁾		○
이시환, 최신무역실무강의 ¹¹⁾		○
한재필, 최신 화환신용장론 ¹²⁾		○
홍충식, 표준 신용장통일규칙론 ¹³⁾	○	○
東京銀行, 貿易と信用狀 ¹⁴⁾		○
東京銀行 システム部 · TRI 編, 貿易と信用狀 ¹⁵⁾		○
浜谷源藏, 最新貿易實務 ¹⁶⁾		○
朝岡良平 編著 逐條解説 信用狀統一規則 ¹⁷⁾		○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개설은행 또는 발행은행이라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개설은행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된 책자가 개설은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신용장통일규칙에서 Opening Bank라는 용어를 사용할 당시에는 개설은행이라고 하였으나 Issuing Bank로 표현이 바뀐 이후에는 모든 책자에서 발행은행으로 통일하여 번역하고 있다.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Opening Bank라는 표현을 Issuing Bank로 바꾸었으므로 Opening Bank 당시에 사용하던 개설은행이라는 용어 대신 Issuing

-
- 5) 강호경 · 임목삼, 최신무역결제론, 두남, 2007, p.125.
6) 구중순, 무역실무, 박영사, 2005, p.255.
7) 박대위, 신용장, 법문사, 1985, p.408.
8) 방희석, 무역실무, 박영사, 2002, p.293.
9) 양영환 · 오원석, 무역상무론, 법문사, 1996. p.289.
10) 이대호, 신용장론, 형설출판사, 1994, p.33.
11) 이시환, 최신무역실무강의, 신양사, 2007, p.152.
12) 한재필, 최신 화환신용장론, 두남, 2008, p.59.
13) 홍충식, 표준 신용장통일규칙론, 초산무역출판공사, 1981, p.69 및 p.71 등 참조.
14) 東京銀行, 貿易と信用狀, 實業之日本社, 1987, p.92.
15) 東京銀行 システム部 · TRI 編, 貿易と信用狀, 實業之日本社, 1996, p.52.
16) 浜谷源藏, 最新貿易實務, 同文館, 1997, p.508.
17) 朝岡良平 編著 逐條解説 信用狀統一規則,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5, p.42.

Bank에 걸맞게 “발행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외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의 신용장과 관련된 양식에서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개설신청서”가 아니라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2. Applicant

공식 번역서에서는 Applicant를 “개설의뢰인”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 고¹⁸⁾, 제5차 규칙 해설서에서도 “개설의뢰인”으로 번역하여 해설하고 있다. 여기서 우선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발행된 각종 책자에서의 Applicant의 번역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 Applicant의 번역어

구 분	개설의뢰인	발행신청인	발행의뢰인
강원진, 신용장론 ¹⁹⁾			○
강호경 · 임목삼, 최신무역결제론 ²⁰⁾	○		
구종순, 무역실무 ²¹⁾	○		
박대위, 신용장 ²²⁾	○		
방희석, 무역실무 ²³⁾	○		
양영환 · 오원석, 무역상무론 ²⁴⁾	○		
이대호, 신용장론 ²⁵⁾	○		
이시환, 최신무역실무강의 ²⁶⁾		○	
한재필, 최신 화환신용장론 ²⁷⁾			○
홍충식, 표준 신용장통일규칙론 ²⁸⁾	○		
東京銀行, 貿易と信用狀 ²⁹⁾			○
東京銀行 システム部 · TRI 編, 貿易と信用狀 ³⁰⁾			○
朝岡良平 編著 逐條解説 信用狀統一規則 ³¹⁾			○

18) 공식번역서, p.16 참조.

19) 강원진, 전계서, p.61.

한편 한국외환은행의 취소불능 내국신용장 발행신청서 양식에서는 “발행신청인”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국민은행의 취소불능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 양식에서는 “개설신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Applicant의 번역으로서 “개설의뢰인”, “발행의뢰인”, “발행신청인”, “개설신청인” 등의 표현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들 중 “개설의뢰인”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것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책자에서 개설의뢰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모두 “발행의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개설의뢰인이라는 용어는 원래 “Opener”를 번역한 것이지만³²⁾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설은행을 발행은행으로 번역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설의뢰인에서 “개설”은 “발행”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야후 국어사전에 의하면 “의뢰”는 “남에게 의지하거나 부탁”하는 것이고, “신청”은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일이나 물품 따위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발행의뢰인” 보다는 “발행신청인”이 우리말답다. 이러한 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은행, 국민은행의 신용장 관련양식에서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개설신청서**”,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개설의뢰서**” 또는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행의뢰서**”가 아니라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다.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의 법률 제정 및 개정에서 큰 흐름의 하나가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한글화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행의뢰인” 보다는 “발행

20) 강호경·임목삼, 전계서, p.124.

21) 구종순, 전계서, p.255.

22) 박대위, 전계서, p.411.

23) 방희석, 전계서, p.292.

24) 양영환·오원석, 전계서. p.289.

25) 이대호, 전계서, p.33.

26) 이시환, 전계서, p.151.

27) 한재필, 전계서, p.59.

28) 홍충식, 전계서, p.69 등 참조.

29) 東京銀行, 전계서, p.92.

30) 東京銀行 システム部·TRI 編, 전계서, p.50.

31) 朝岡良平 編著 전계서, p.42.

32) 浜谷源藏, 전계서, p.508 참조.

신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운송서류와 관련된 용어

1. Port of discharge

공식 번역서에서는 Port of discharge를 “하역항”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고³³⁾, 제5차 규칙 해설서에서는 “양륙항”으로 번역하여 해설하고 있었다.³⁴⁾ 여기서 우선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발행된 각종 책자에서의 Port of discharge의 번역을 살펴보면 (표3)과 같다.

(표3) Port of discharge의 번역어

구 분	양륙항	하역항
강원진, 신용장론 ³⁵⁾	○	
강호경·임목삼, 최신무역결제론 ³⁶⁾		○
박대위, 신용장 ³⁷⁾	○	
오원석, 국제운송론 ³⁸⁾	○	
이대호, 신용장론 ³⁹⁾	○	
이시환·김정희, 국제운송론 ⁴⁰⁾	○	
한재필, 최신 화환신용장론 ⁴¹⁾	○	
東京銀行, 貿易と信用狀 ⁴²⁾	○	
東京銀行 システム部・TRI 編, 貿易と信用狀 ⁴³⁾	○	
朝岡良平 編著 逐條解説 信用狀統一規則 ⁴⁴⁾	○	

33) 공식번역서, p.125, p.145 및 p.160 등 참조.

34) 제5차규칙 해설, p.65 및 p.71 등 참조

35) 강원진, 전계서, p.471 등.

36) 강호경·임목삼, 전계서, p.305.

37) 박대위, 전계서, p.295.

38) 오원석, 국제운송론, 박영사, 2004, p.192.

39) 이대호, 전계서, p.417.

40) 이시환·김정희, 국제운송론, 대왕사, 2005, p.437 등.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나 일본 모두 Port of discharge의 번역으로서 “양륙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유독 공식 번역서에서만 “하역항”이라고 하고 있다. 야후 국어사전에 의하면 하역이란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을 가리킨다. 따라서 하역항이라고 하면 선적항과 양륙항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예컨대 UCP 600 제19조 a항 iii호에서 “port of loading or port of discharge”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적항(port of loading)을 제외하면 당연히 하역항이 아니라 양륙항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상법에 의하면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으로 양륙항을 규정하고 있고,⁴⁵⁾ 1978년 유엔 해상물건운송협약(함부르크규칙)에서도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으로 “Port of loading”과 “Port of discharge”를 규정하고 있는데,⁴⁶⁾ 이것이 선적항과 양륙항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Port of discharge를 하역항이라고 번역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당연히 제5차 규칙 해설서에서 사용하던 양륙항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A date of pick-up

공식 번역서에서는 제25조 a항 ii호에 있는 “indicate a date of pick-up or receipt or wording to this effect”를 “집배 또는 수령일자 또는 이러한 취지의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번역하여 “a date of pick-up”을 “집배일”이라고 하고 있고⁴⁷⁾, 제5차 규칙 해설서에서는 “접수일”로 번역하여 해설하고 있었다.⁴⁸⁾ 여기서 우선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각종 책자에서의 A date of pick-up의 번역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41) 한재필, 전게서, p.407.

42) 東京銀行, 전게서, pp.252-253.

43) 東京銀行 システム部・TRI 編, 전게서, p.174.

44) 朝岡良平 編著 전게서, p.266.

45) 상법 제814조; 2008년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의하면 제853조.

46) 제15조 1항.

47) 공식번역서, p.188.

48) 제5차규칙 해설, p.86.

(표4) A date of pick-up의 번역어

구 분	접수일	집하일	수집일
강원진, 신용장론 ⁴⁹⁾	○		
강호경 · 임복삼, 최신무역결제론 ⁵⁰⁾		○	
오원석, 국제운송론 ⁵¹⁾	○		
이시환 · 김정희, 국제운송론 ⁵²⁾			○
한재필, 최신 화환신용장론 ⁵³⁾			○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date of pick-up의 번역어로서 접수일, 집하일, 수집일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공식 번역서에서와 같이 집배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야후 영어사전에 의하면 pick-up은 (화물 · 우편물 따위의) 수집, 집배를 가리킨다. 한편 야후 국어사전에 의하면 “집배”란 “한 곳으로 모아서 배달함”이라고 풀이하고 있고, “수집”은 “거두어 모음”, 그리고 “집하”는 “화물이나 상품 따위를 모음”, “접수”는 “문서, 금품 따위를 받아들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집배일은 집배가 배달까지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적절치가 않다.

한편 접수일이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는 느낌이 드는 것으로, Pick-up과 같이 병기하고 있는 Receipt(수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용어 중에서는 수집일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3. Shipper's load and count

공식 번역서에서는 제26조 b항에 있는 Shipper's load and count를 “선적인이 적재하고 검수하였음”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실무해설에서는 “선적인의 적재 및 수량에 따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⁵⁴⁾ 제5차 규칙 해설서에서는

49) 강원진, 전계서, p.479.

50) 강호경 · 임복삼, 전계서, p.321.

51) 오원석, 전계서, p.219.

52) 이시환 · 김정희, 전계서, p.455.

53) 한재필, 전계서, p.442.

“송화인의 적재 및 계량에 따름”으로 번역하고 있었다.⁵⁵⁾ 여기서 우선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각종 책자에서의 Shipper's load and count의 번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강원진, 신용장론⁵⁶⁾; 송화인의 적재 및 계수에 따름
- ② 박대위, 신용장⁵⁷⁾; 화주의 적재와 계수에 따라
- ③ 오원석, 국제운송론⁵⁸⁾; 송화인의 적재 및 계측에 따름
- ③ 이시환·김정희, 국제운송론⁵⁹⁾; 송하인의 적재 및 계량

한편 일본의 경우 이를 별도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Shipper's load and count”로 표기하여 설명하고 있다.⁶⁰⁾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각종 외래어를 일본말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특별히 번역하지 않은 것은 이 용어의 번역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선 Shipper는 법률상의 용어로서 송하인을 가리킨다.⁶¹⁾ 그리고 화주라고 하면 화물의 주인으로서 송하인, 수하인, 선하증권의 소지인 등, 운송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총칭하는 것이다.⁶²⁾ 그리고 송화인은 송하인을 한글화 한 것이지만 실정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지난 2007년 8월 해상법을 개정하면서 각 조문을 한글화하였지만 송하인을 송화인으로 고치지 않은 것은 송하인을 우리말로 본 것이라 생각된다. 야후 국어사전에서도 “송하인”을 “운송계약에서 물품의 운송을 위탁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고, 송화인에 대하여는 뜻풀이를 하고 있지 않다.

한편 Count는 검수, 수량, 계수, 계량 등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검수는 물건의 수량을 검사하는 것이고, 계수는 수량을 세는 것이다. 그리고 계량은 분량을 헤아리는 것으로 무게, 길이, 부피 등을 헤아리는 것이고, 계측은 계

54) 공식번역서, p.193 및 p.195.

55) 제5차규칙 해설, p.88.

56) 강원진, 전계서, p.479 등.

57) 박대위, 전계서, p.313.

58) 오원석, 전계서, p.222.

59) 이시환·김정희, 전계서, p.457.

60) 東京銀行 システム部・TRI 編, 전계서, p.152. 및 朝岡良平 編著 전계서, p.316 참조.

61) 상법 제791조 등 참조.

62) 大木一男, 船荷證券の實務的解説, 成山堂書店, 1979, p.52 참조.

량과 동의어이다. 따라서 계량(또는 계측)이 계수나 검수보다 범위가 넓다. 그러므로 “Shipper’s load and count”를 굳이 번역한다면 “송하인의 적재 및 계량(또는 계측)”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4. Courier Receipt

공식 번역서에서는 제25조에 있는 Courier Receipt를 “특송배달영수증”으로 번역하고 있고,⁶³⁾ 제5차 규칙 해설서에서는 “특사수령증”으로 번역하여 해설하고 있었다.⁶⁴⁾ 여기서 우선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발행된 각종 책자에서의 Courier Receipt의 번역을 살펴보면 (표5)와 같다.

(표5) Courier Receipt의 번역어

구 분	특사 수령증	특사배달 수취증	택배 수취증	택배업자 수령서	특사 배달증
강원진, 신용장론 ⁶⁵⁾	○				
강호경·임목삼, 최신무역결제론 ⁶⁶⁾	○				
이대호, 신용장론 ⁶⁷⁾		○			
이시환·김정희, 국제운송론 ⁶⁸⁾					○
한재필, 최신 화환신용장론 ⁶⁹⁾			○		
東京銀行 システム部・TRI 編, 貿易 と信用狀 ⁷⁰⁾				○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urier Receipt는 특사수령증, 특사배달수취증, 택배수취증, 택배업자수령서, 특사배달증 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63) 공식번역서, p.188.

64) 제5차규칙 해설, p.93.

65) 강원진, 전계서, p.323 등.

66) 강호경·임목삼, 전계서, p.321.

67) 이대호, 전계서, p.429.

68) 이시환·김정희, 전계서, p.455.

69) 한재필, 전계서, p.442.

70) 東京銀行 システム部・TRI 編, 전계서, p.141.

런데 야후 국어사전에 의하면 특송은 “특급배송의 준말”이고, 특사는 “특별히 보내는 사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특송과 특사만 두고 보면 특송이 보다 바람직한 용어로 생각된다. 그러나 특송배달이라고 하면 이미 특송 속에 배달(배송)의 의미가 담겨 있어 이중표현이 되므로, 일반적으로 특송배달이라는 표현 대신 특사배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⁷¹⁾ 한편, Receipt는 수령(증), 수취(증), 영수(증) 등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야후 국어사전에 의하면 수령증은 돈이나 물품을 받았다는 증거로 써 주는 증서이다. 그리고 영수(領收)는 돈 따위를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영수증이라 함은 돈을 받았다는 증거로 써주는 것이고, 수취증은 수령증과 비슷하지만 수취증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야후 국어사전에 수취증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렇게 볼 때 Courier Receipt는 특송배달 영수증이 아니라 특사배달수령증 또는 특사배달증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동조 b항에 규정하고 있는 Courier Charge도 특송배달료가 아니라 특사배달료로 번역하여야 할 것이다.

5.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공식 번역서에서는 제22조에 있는 Charter Party Bill of Lading을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으로 번역하고 있고⁷²⁾, 제5차 규칙 해설서에서도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으로 번역하고 있었다.⁷³⁾ 여기서 우선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발행된 각종 책자에서의 Charter Party Bill of Lading의 번역을 살펴보면 (표6)과 같다.

71) 예컨대 외환은행 홈페이지에 보면 2008년 4월 1일부터 특사배달료를 인상한다는 다음과 같은 안내 공문이 있다.

“선적서류의 해외 발송 관련 특사배달료에 대해 특사배달회사에서 인상을 요청하여 왔는 바, 그간의 물가 상승 등을 감안시 이에 대한 수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에 고객님들로부터 징수하는 특사배달료의 요금을 다음과 같이 인상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식번역서 자체에도 특사배달업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p.189 참조).

72) 공식번역서, p.166.

73) 제5차규칙 해설, p.74.

(표6) Charter Party Bill of Lading의 번역어

구 분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용선계약 선하증권	용선계약 선화증권
강원진, 신용장론 ⁷⁴⁾	○		
박대위, 신용장 ⁷⁵⁾		○	
오원석, 국제운송론 ⁷⁶⁾			○
이대호, 신용장론 ⁷⁷⁾			○
이시환 · 김정희, 국제운송론 ⁷⁸⁾		○	
한재필, 최신 화환신용장론 ⁷⁹⁾			○
東京銀行 システム部 · TRI 編, 貿易と信用狀 ⁸⁰⁾		○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Charter Party Bill of Lading의 번역어는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용선계약 선하증권, 용선계약 선화증권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 Bill of Lading은 상법 제852조 등에 규정되고 있는 선하증권을 가리킨다. 그런데 선하증권이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여 우리말식으로 고쳐 선화증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실정법상 명시규정을 두고 있는 용어는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는 그냥 사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선하증권은 용선계약에 의거하여 발행되고 용선계약 조건에 따른다고 하여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라고도 하지만 용선계약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용선계약 선하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야후 용어사전에서도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 아니라 용선계약 선하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74) 강원진, 전계서, p.177.

75) 박대위, 전계서, p.416.

76) 오원석, 전계서, p.165.

77) 이대호, 전계서, p.240.

78) 이시환 · 김정희, 전계서, p.440.

79) 한재필, 전계서, p.424.

80) 東京銀行 システム部 · TRI 編, 전계서, p.139.

IV. 보험서류와 관련된 용어

1. Cover Note

공식 번역서에서는 제28조 c항에 있는 Cover Note를 “잠정적 보험영수증”으로 번역하고 있고⁸¹⁾, 실무해설부분에서는 “부보각서”로 표현하여 해설하고 있다.⁸²⁾ 그리고 제5차 규칙 해설서에서는 “보험인수증”으로 번역하여 해설하고 있었다.⁸³⁾ 여기서 우선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발행된 각종 책자에서의 Cover Note의 번역을 살펴보면 (표7)과 같다.

(표7) Cover Note의 번역어

구 분	보험 승낙 서	부보 각서	보험 인수 증	가 보험 증권	보험 승인 장	예정 보험 승인장
강원진, 신용장론 ⁸⁴⁾	○	○				
강호경·임목삼, 최신무역결제론 ⁸⁵⁾			○			
박대위, 신용장 ⁸⁶⁾		○			○	
양승규·한창희 ⁸⁷⁾			○			
이대호, 신용장론 ⁸⁸⁾		○				
이시환, 신무역보험론 ⁸⁹⁾		○				
정동윤, 상법(하) ⁹⁰⁾				○		
한재필, 최신 화환신용장론 ⁹¹⁾						○
朝岡良平 編著 逐條解説 信用狀統一規則 ⁹²⁾		○				

81) 공식번역서, p.202.

82) 공식번역서, p.206.

83) 제5차규칙 해설, p.93.

84) 강원진, 전계서, p.325 및 p.483 등.

85) 강호경·임목삼, 전계서, p.326.

86) 박대위, 전계서, p.319, p.489.

87) 양승규·한창희, 해상보험법, 심지원, 2007,p.124.

88) 이대호, 전계서, p.431.

89) 이시환, 신무역보험론, 대왕사, 2005, p.387.

90) 정동윤, 상법(하), 법문사, 2003, p.514.

91) 한재필, 전계서, p.450.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ver Note의 번역어는 보험승낙서, 부보각서, 보험인수증, 보험승인장, 예정보험승인장 등 다양하지만 공식 번역서에서와 같이 잠정적 보험영수증으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일반적으로 Cover Note의 번역어로 “부보각서”가 널리 이용되고 있고 공식번역서 해설 부분에서도 부보각서로 표현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잠정적 보험영수증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부보각서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굳이 그 서류의 내용에 따라 작명을 한다면 잠정적 보험영수증이 아니라 “잠정적 보험증명서”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Exclusion Clause

공식 번역서에서는 제28조 i항에 있는 “An insurance document may contain reference to any exclusion clause”를 “보험서류는 어떠한 제외문구에 대한 언급을 포함할 수 있다”고 번역하여 Exclusion Clause를 “제외문구”라고 하고 있다.⁹³⁾ 그런데 보험에서 Exclusion Clause라고 하면 보통 “면책약관”으로 번역하고 있다.⁹⁴⁾ 따라서 제외문구 대신에 널리 사용되는 “면책약관” 또는 “면책조항”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UCP 600 제28조 i항에 규정된 원칙은 오늘날 무수히 많은 면책약관이 보험서류상에 등장하기 때문에 UCP 600에서 새로 도입한 것이다.⁹⁵⁾

3. Insurance Certificate

공식 번역서에서는 제28조 d항에 있는 Insurance Certificate를 “보험증서”로 번역하고 있고⁹⁶⁾, 실무해설부분에서는 “보험선언서”로 표현하여 해설하고

92) 朝岡良平 編著 전게서, p.330.

93) 공식번역서, p.204.

94) 한국보험학회 편, 보험사전, 한국보험학회, 1997, p.241.

95) ICC, *Commentary on UCP 600*, ICC Publications Department; ICC Publication No.680, 2007, p.133.

96) 공식번역서, p.202.

있다.⁹⁷⁾ 그리고 제5차 규칙 해설서에서는 “보험증명서”로 번역하여 해설하고 있었다.⁹⁸⁾ 여기서 우선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발행된 각종 책자에서의 Insurance Certificate의 번역을 살펴보면 (표8)과 같다.

(표8) Insurance Certificate의 번역어

구 분	보험 증명서	보험증서	보험 승인장
강원진, 신용장론 ⁹⁹⁾	○		
강호경·임목삼, 최신무역결제론 ¹⁰⁰⁾		○	
박대위, 신용장 ¹⁰¹⁾	○		
양승규·한창희 ¹⁰²⁾	○		
이대호, 신용장론 ¹⁰³⁾	○		
이시환, 신무역보험론 ¹⁰⁴⁾	○		
한재필, 최신 화환신용장론 ¹⁰⁵⁾	○		
東京銀行 システム部・TRI 編, 貿易と信用狀 ¹⁰⁶⁾			○
朝岡良平 編著 逐條解説 信用狀統一規則 ¹⁰⁷⁾	○		○
木村榮一, 海上保險 ¹⁰⁸⁾			○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Insurance Certificate의 번역어는 보험증명서, 보험증서, 보험승인장 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증명서라는 용어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보험승인장이라

97) 공식번역서, p.206.

98) 제5차규칙 해설, p.93.

99) 강원진, 전게서, p.325 및 p.483 등.

100) 강호경·임목삼, 전게서, p.326.

101) 박대위, 전게서, p.280.

102) 양승규·한창희, 전게서, p.34.

103) 이대호, 전게서, p.431.

104) 이시환, 전계 신무역보험론, p.386.

105) 한재필, 전게서, p.450.

106) 東京銀行 システム部・TRI 編, 전게서, p.156.

107) 朝岡良平 編著 전게서, p.329 및 p.330.

108) 木村榮一, 海上保險, 千倉書房,, 1978, p.86.

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야후 국어사전에 의하면 “증서”는 “권리나 자격,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이고, “증명서”는 “무슨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두 용어의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굳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보험증명서 대신에 보험증서로 바꾸어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제5차 규칙 해설서에서와 같이 보험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 Declaration

공식 번역서에서는 제28조 d항에 있는 “insurance certificate or declaration under an open cover”에서 “declaration”을 “(포괄보험의)확인서”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고¹⁰⁹⁾, 제5차 규칙 해설서에서는 “(포괄보험의)확정통지서”로 번역하고 있었다.¹¹⁰⁾ 여기서 우선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발행된 각종 책자에서의 Declaration의 번역을 살펴보면 (표9)와 같다.

(표9) Declaration의 번역어

구 분	통지서	확인서	선적확인 증명서
강원진, 신용장론 ¹¹¹⁾	○		
강호경·임목삼, 최신무역결제론 ¹¹²⁾		○	
한재필, 최신 화환신용장론 ¹¹³⁾			○
東京銀行 システム部・TRI 編, 貿易と信用狀 ¹¹⁴⁾	○		
浜谷源藏, 最新貿易實務 ¹¹⁵⁾	○		

109) 공식번역서, p.202.

110) 제5차규칙 해설, p.93.

111) 강원진, 전계서, p.183, p.324 및 p.483.

112) 강호경·임목삼, 전계서, p.327.

113) 한재필, 전계서, p.450.

114) 東京銀行 システム部・TRI 編, 전계서, p.154.

115) 浜谷源藏, 전계서, p.156.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Declaration의 번역어는 통지서, 확인서, 선적확인증명서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Declaration은 포괄예정보험계약 하에서 피보험자가 하는 확정통지(서)이다. 따라서 Declaration은 제5차 규칙 해설서에서와 같이 “확정통지서”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증명서나 포괄보험에서의 확정통지서에 보험회사·개인보험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수탁인이 사전에 서명하는 것이 관습이다.¹¹⁶⁾ 이러한 서류에는 통상 피보험자나 또는 그 밖의 기명 당사자에 의한 부서(countersignature)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경우 그에 따라 부서가 되어야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수리된다.¹¹⁷⁾

적합 피보험자가 포괄예정보험계약 하에서 확정통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한 증명서(certificate)의 사본을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보험자에게 보낸다.¹¹⁸⁾

5. Underwriter

공식 번역서에서는 제28조에 있는 Underwriter를 “보험인수인”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고¹¹⁹⁾, 제5차 규칙 해설서에서는 “보험업자”로 번역하고 있었다,¹²⁰⁾ 여기서 우선 우리나라 및 일본에서 발행된 각종 책자에서의 Underwriter의 번역을 살펴보면 (표10)과 같다.

116) 보험증명서와 확정통지서는 모두 포괄예정보험계약에 의거하여 선적 전에 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에게 교부되는 서류이며, 보험자의 서명은 있지만 선적명세는 공란으로 비어있는 것으로, 선적을 한 때에 피보험자가 선적명세를 기입함으로써 완성되는 보험서류이다(東京銀行 システム部・TRI 編, 전게서, p.156).

117) ICC, *op.cit.*, p.131.

118) R.H. Brown, *Dictionary of Marine Insurance Terms and Clauses*(5th ed.), London, Witherby & Co. Ltd., 1989, D4. ,

119) 공식번역서, p.202.

120) 제5차규칙 해설, p.93.

(표10) Underwriter의 번역어

구 분	보험 업자	보험 자	보험인 수업자	개인보 험업자	개인 보험자
강원진, 신용장론 ¹²¹⁾	○				
박대위, 신용장 ¹²²⁾			○		
이대호, 신용장론 ¹²³⁾			○		
이시환, 신무역보험론 ¹²⁴⁾				○	
한재필, 최신 화환신용장론 ¹²⁵⁾		○			
東京銀行 システム部・TRI 編, 貿易と信用 狀 ¹²⁶⁾				○	
朝岡良平 編著 逐條解説 信用狀統一規則 ¹²⁷⁾				○	
木村榮一, 海上保險 ¹²⁸⁾					○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Underwriter의 번역어는 보험업자, 보험자, 보험인수업자, 개인보험업자, 개인보험자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보험인수업자(또는 보험인수인)란 말은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자”라는 뜻으로 보험업자(insurer)와 동의어로 이용된다.¹²⁹⁾ 한편 보험업자 또는 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개인보험업자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그런데 UCP에서는 Underwriter를 보험회사와 구별하여 병기하고 있으므로 영국의 Lloyd’s Underwriter와 같은 개인보험업자를 가리키는 것이다.¹³⁰⁾ 따라서 여기서 Underwriter는 명확하게 “개인보험업자” 또는 “개인보험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1) 강원진, 전계서, p.325.

122) 박대위, 전계서, p.318.

123) 이대호, 전계서, p.431.

124) 이시환, 전계 신무역보험론, p.387.

125) 한재필, 전계서, p.450.

126) 東京銀行 システム部・TRI 編, 전계서, p.154.

127) 朝岡良平 編著, 전계서, p.331.

128) 木村榮一, 海上保險, 千倉書房, 1978, p.15.

129) 朝岡良平 編著, 전계서, p.331.

130) 이시환, 전계 신무역보험론, p.387.; 東京銀行 システム部・TRI 編, 전계서, p.154.; 朝岡良平 編著, 상계서, p.331.

V. 표현상의 문제점

“UCP 600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공식 번역 및 해설서”에 보면 동일한 영문 규정의 번역이 약간씩 차이가 나기도 하고, 또 번역문상에 있는 용어와 이를 해설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공식 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를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

1. 동일한 문장 번역의 불일치

UCP 600에는 각종 운송서류에 대하여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조문에 의하면 운송서류의 종류만을 제외하고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많이 두고 있다. 그런데 동일한 문장의 번역이 조문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내용이 달라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공식 번역서라고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문장은 동일하게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약간씩 다르게 표현된 것을 그 중 어느 하나로 통일하여 동일한 표현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조 a항 i 호에 있는 아래 문장의 번역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and be signed by”

- 1) 제19조 및 제23조;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 2) 제20조;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 3) 제21조;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고 다음의 자에 의해서 서명되어야 한다.

(2) 다음 각조 a항 ii호에 있는 아래 문장의 번역

“indicate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a named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stated in the credit by:

The date of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non-negotiable sea waybill;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unless the bill of lading(non-negotiable sea waybill;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contains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in which case the date stated in the on board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1) 제20조(선하증권); 물품이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항에서 기명된 선박에 본선적재 되었다는 것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선하증권이 선적일자를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선하증권에 본선적재표기가 된 경우에는 본선적재표기에 기재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2) 제21조(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및 제22조(용선계약부 선하증권); 물품이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에서 기명된 선박에 본선적재 되었다는 것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 선적일자를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의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용선계약부 선하증권)에 본선적재표기가 된 경우에는 본선적재표기에 기재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3) 다음 각조 a항 ii호에 있는 아래 문장의 번역

“If the bill of lading(non-negotiable sea waybill) contains the indication “intended vessel” or similar qualification in relation to the name of the vessel,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and the name of the actual vessel is required.”

1) 제20조(선하증권); 선하증권이 선박명과 관련하여 “예정선박”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선적일과 실제 선박명을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가 요구된다.

2) 제21조(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이 선박명과 관

련하여 “예정선박”이라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선적일과 실제 선박명을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가 요구된다.

(4) 다음 각조 a항 iii호에 있는 아래 문장의 번역

“If the bill of lading(non-negotiable sea waybill) does not indicate the port of loading stated in the credit as the port of loading, or if it contains the indication “intended” or similar qualification in relation to the port of loading,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port of loading as stated in the credit, the date of shipment and the name of the vessel is required. This provision applies even when loading on board or shipment on a named vessel is indicated by pre-printed wording on the bill of lading(non-negotiable sea waybill).”

- 1) 제20조(선하증권); 선하증권이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을 선적항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선적항과 관련하여 “예정된”이라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과 선적일 및 **선적 선박명**을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가 요구된다. 이 조항은 기명된 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이** 미리 인쇄된 문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에 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 2) 제21조(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이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을 선적항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선적항과 관련하여 “예정된”이라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과 선적일 및 **적재 선박명**을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가 요구된다. 이 조항은 기명된 선박에의 본선적재가 미리 인쇄된 문구에 의하여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에 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5) 다음 각조 b항에 있는 아래 문장의 번역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ransshipment means unloading from one vessel and reloading to another vessel during the carriage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ated in the credit.”

- 1) 제20조(선하증권); 이 조항의 목적상, 환적은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부터 하역항까지의 운송도중에 **하나의** 선박으로부터 양하되어 다른 선박으로 재적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 2) 제21조(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이 조항의 목적상, 환적은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부터 하역항까지의 운송도중에 **한** 선박으로부터 양하되어 다른 선박으로 재적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2. 번역문과 해설부분에서의 용어의 불일치 등

예컨대 제28조(보험서류와 부보범위)에서 Proxy를 “수탁인”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실무해설에서는 “수임자”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고,¹³¹⁾ 또 Cover Note”를 번역문에서는 “잠정적 보험영수증”으로, 실무해설에서는 “부보각서”로 표현하고 있으며, Insurance Certificate도 번역문에는 “보험증서”로, 실무해설에서는 “보험선언서”로 표기하고 있다.¹³²⁾

한편 제2조(정의)에서 “Applicant”를 “개설의뢰인”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실무해설 11의 개설은행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는 이를 “개설신청인”으로도 표시하고 있다.¹³³⁾

이 밖에도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27조 b항에서 Shipper’s load and count를 “선적인이 적재하고 검수하였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실무해설에는 이를 “선적인의 적재 및 수량에 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¹³⁴⁾ 이들 용어는 앞 장에서 살펴 본 내용을 참고로 하여 어느 하나로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제28조 a항 끝부분의 “signed for or on behalf of the insurance company or underwriter”를 “보험회사 또는 보험중개인을 대리하여 서명”이라고 하여¹³⁵⁾ Underwriter를 보험중개인으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단순 착오로 보이지만 “개인보험업자”로 정정하여야 한다.

131) 공식번역서, p.202 및 p.204.

132) 공식번역서, p.202 및 p.206.

133) 공식번역서, p.16 및 p.23 참조.

134) 공식번역서, p.195.

135) 공식번역서, p.202.

VI. 결 론

무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관련 책자에서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UCP 600을 번역하면서 공식번역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앞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사용해 줄 것을 권고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앞으로 UCP 뿐만이 아니라 Incoterm, eUCP, ISBP 등 ICC의 각종 자료들도 공식번역이 되고, 또한 한 걸은 더 나아가 이와 유사한 국제적 통일규칙이 나오면 곧바로 공식 번역서를 출간하는 체제가 마련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무역관련 학회에서도 무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에 보다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공식적인 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통일 및 보편·타당성이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하여야 하고, 또 뜻하지 않은 오역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UCP 600의 공식 번역서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사용하고 있는 용어상에는 명백히 잘못되어 반드시 고쳐야 할 것도 있고, 또한 보다 보편·타당한 용어로 바꾸어야 할 것도 있다. 전자의 예로서는 Port of discharge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하역항이 아니라 양륙항으로 고쳐야 한다. 또 후자의 예로서는 Issuing Bank를 들 수 있으며, 이것은 개설은행이 아니라 발행은행으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동일한 문장을 약간씩 다르게 번역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중 어느 하나로 통일시켜야 한다.

셋째 명백한 착오를 일으킨 것도 있는데, 이것 또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Underwriter를 보험중개인으로 번역한 것이 그 예이다.

이 밖에도 논자의 능력부족으로 UCP 600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논자의 견해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글을 계기로 앞으로 동학 제현의 많은 관심 속에 국내에서 무역에 관한 용어의 통일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동일한 단어는 동일한 용어로 번역됨으로써 학문연구나 실무상에 혼란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 강원진, 신용장론, 박영사, 2002.
- 강호경·임목삼, 최신무역결제론, 두남, 2007.
- 구종순, 무역실무, 박영사, 2005.
- 대한상공회의소 ICC 한국국내위원회, 제5차 개정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 1993. 6.
- 대한상공회의소·ICC Korea, 전국은행연합회, UCP 600 [제6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 2007.
- 박대위, 신용장, 법문사, 1985.
- 방희석, 무역실무, 박영사, 2002.
- 양승규·한창희, 해상보험법, 심지원, 2007.
- 양영환·오원석, 무역상무론, 법문사, 1996.
- 오원석, 국제운송론, 박영사, 2004.
- 이대호, 신용장론, 형설출판사, 1994.
- 이시환, 신무역보험론, 대왕사, 2005.
- _____, 최신무역실무강의, 신양사, 2007.
- _____. 김정희, 국제운송론, 대왕사, 2005.
- 정동윤, 상법(하), 법문사, 2003.
- 한국보험학회 편, 보험사전, 한국보험학회, 1997
- 한재필, 최신 화환신용장론, 두남, 2008.
- 홍충식, 표준 신용장통일규칙론, 초산무역출판공사, 1981.
- 加藤 修, 貿易保險の實務, 同文館, 1985.
- 大木一男, 船荷證券の實務的解説, 成山堂書店, 1979,
- 東京銀行, 貿易と信用狀, 實業之日本社, 1987.
- 東京銀行 システム部・TRI 編, 貿易と信用狀, 實業之日本社, 1996.
- 浜谷源藏, 最新貿易實務, 同文館, 1997.
- 朝岡良平 編著 逐條解説 信用狀統一規則, 金融財政事情研究會, 1985.
- Brown, R.H. *Dictionary of Marine Insurance Terms and Clauses*(5th ed.), London, Witherby & Co. Ltd., 1989,
- ICC, *Commentary on UCP 600*, ICC Publications Department; ICC Publication No.680, 2007.

ABSTRACT

Some Problems in the Official Commentary on UCP 600 published by KCCI

Lee, Shie Hwan

Letters of Credit are the most common method of payment for goods in the export trade, and banking practice relating to letters of credit is standardised by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which are a set of rules issu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The current version is UCP 600, which took effect on July 1, 2007.

To assist the practitioners of Documentary Credits, the KCCI(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uthorised a new publication-Official Commentary on UCP 600. This new publication added the word "official" in the title.

In order to being an official commentary, the terms and expression should be correct and unified. But there is some problems in official commentary and legal phraseology.

The problem was appeared that ICC UCP 600's were translated into Korean UCP 600 version. For example, "Issuing Bank", "Applicant", "Port of discharge", "A date of pick-up", "Shipper's load and count", "Courier Receipt",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Cover Note", "Exclusion Clause", "Insurance Certificate", "Declaration, Underwriter".

If can be used 'Official Commentary on UCP 600', the above statements should be a compliment though take a wide professional opinions or held a public hearing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and substitute the term used and unify the expression in official commentary.

Key Words: UCP 600, Official Commentary
